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

2016.3.30. *****이 대한민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에 따른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에 의한 사업의 손해를 사유로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의 신고·납부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.

- 가. 납 세 의 무 자 : *****
- 나. 주 소 : *****
- 다. 신 청 사 유 :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에 의한 사업의 손해
- 라. 신 청 세 목 :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
- 마. 신고납부예상금액 : 금5,700,000원
- 바. 당 초 납 부 기 한 : 2016.4.30.
- 사. 연 장 신 청 기 간 : 2016.5.1. ~ 2016.10.31.(184일간)
- 아. 검 토 결 과 : 신고·납부기한 연장 승인

- 붙임 1. 행정자치부 공문 및 지원기준 1부.
 2.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1부.
 3.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 1부. 끝.

주무관	이기명	지방소득세4팀	박종수	세무2과장	대 이정현	기획경제국장	전결 04/06 김용운
-----	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11895 () 접수 ()
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-3423-5746 /전송 02-3423-8818 / dlrlauddla@gangnam.go.kr / 부분공개